

1. 세부 지원내용

<과제 신청 시 유의 사항>

- 본 사업은 1단계(신약후보 물질 발굴 및 비임상 연구지원), 2단계(1단계에서 발굴된 신약 후보물질을 바탕으로 임상 전단계인 IND-enabling 패키지 완성 및 IND 승인 획득 지원)를 지원하는 사업 중 1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동 사업은 1단계 수행을 완료한 과제 중 기술성·사업성 등을 검증한 과제를 대상으로 **단계 평가를 통해 2단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** 지원 사업 입니다.
- 신청기업(중소기업)은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시한 기술제안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되, 2단계에 진행할 연구개발 관련 내용은 간략하게 기재하셔도 됩니다.
 - 단, 추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이 확정된 과제는 **단계평가 의견 및 2단계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등을 반영한 수정연구개발계획서를 필수로 제출**해야 합니다.
- 단계평가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한 **단계보고서 및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단계 지원과제를 선정·지원할 계획**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(※ 단계보고서 및 2단계(R&D) 연구개발계획서는 1단계 종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필수 제출)
- **1단계 수행과제 중 단계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과제만 2단계 계속 지원이 가능**하오니,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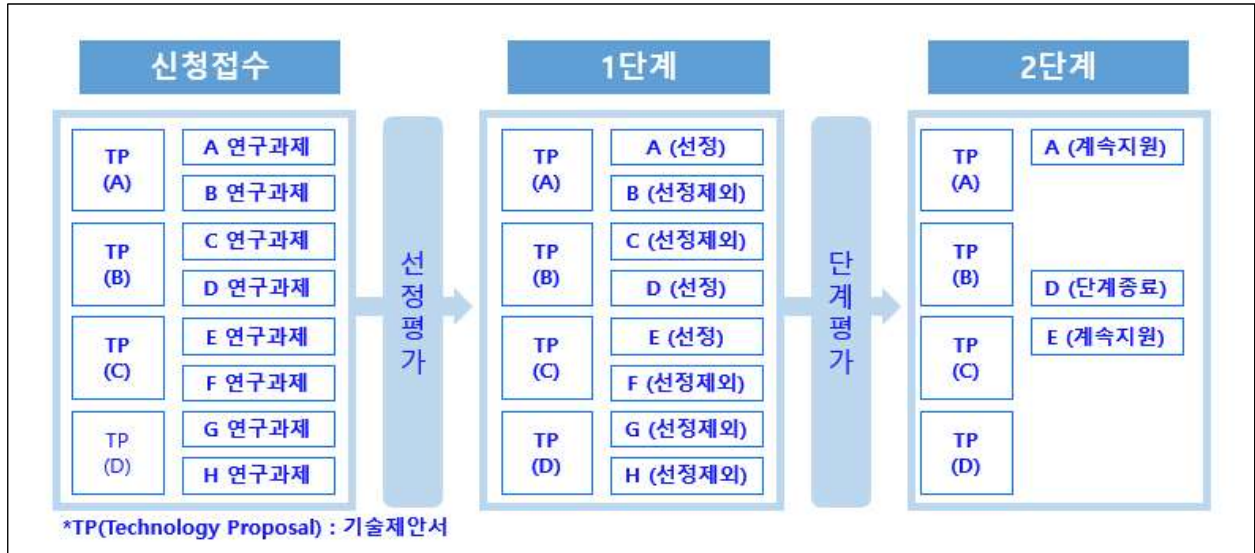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목적

- 신약후보물질 연구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해외 유명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한 신약 개발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

□ 지원내용

- 아스텔라스 제약, 마루호, 오노약품공업 3개 글로벌 제약사(국제 공동연구개발기관)가 제안한 제약 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동 연구 지원
 -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은 R&D자문 및 데이터 검증 등 수행
 - (1단계)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비임상 연구 지원(3년)
 - (2단계) 1단계에서 발굴된 신약후보물질을 바탕으로 임상 전 단계인 IND-enabling 패키지 완성 및 IND* 승인획득 지원(2년)
- ※ 2단계는 1단계 종료 후 단계 평가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

<에코브릿지(수요품목) 지원절차>



- **지원규모** : (‘26년) 10억원, 6개 과제 내외
 - * 지원 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 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**지원유형 및 분야** : 신약 후보 물질 등 제약·바이오 분야
- **지원자격**
 - (주관연구개발기관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(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)
 - * 매출액 기준(20억원 이상) 미적용
 - (공동연구개발기관) 「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
 - (위탁연구개발기관)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 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
- **지원기간 및 한도** : 최대 5년, 25억원 이내

| 구 분 |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|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에코브릿지(수요품목) 1단계 | 최대 3년, 15억원 이내 | 25% 이상 |
| 에코브릿지(수요품목) 2단계 | 최대 2년, 10억원 이내 | 25% 이상 |

※ 1단계+2단계 모두 수행시 최대 5년, 25억 이내 지원

□ 연구개발비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

<연구개발 기간 예시>

| 구분 | 총 연구개발기간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
| 1단계 | '26.9.1~'26.12.31 (4개월) | '27.1.1~'27.12.31 (12개월) | '28.1.1~'28.12.31 (12개월) | '29.1.1~'29.8.31 (8개월) |
| 2단계 | '29.9.1~'29.12.31 (4개월) | '30.1.1~'30.12.31 (12개월) | '31.1.1~'31.8.31 (9개월) | - |

- 선정평가 결과,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
- *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25%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,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% 이상 현금 부담

□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

- (국제공동연구개발비)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계상

<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 | |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| | | 총 연구개발비 |
|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|
| | | 국내기관 |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| 합계 | 현금 | 현물 | 합계 | |
| 1단계 | 1차년도 | 125 | 41 | 166 | 4.2 | 37.8 | 42 | 208 |
| | 2차년도 | 375 | 125 | 500 | 12.5 | 81 | 125 | 625 |
| | 3차년도 | 375 | 125 | 500 | 12.5 | 81 | 125 | 625 |
| | 4차년도 | 249 | 85 | 334 | 8.3 | 54 | 83 | 417 |
| 2단계 | 1차년도 | 125 | 41 | 166 | 4.2 | 37.8 | 42 | 208 |
| | 2차년도 | 375 | 125 | 500 | 12.5 | 81 | 125 | 625 |
| | 3차년도 | 249 | 85 | 334 | 8.3 | 54 | 83 | 417 |

* 단,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%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 필수

- (지급 기준) 연구개발비 규모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며, 협약서상 지급 시기별 원화 지급액을 실제 연구개발비 지급일 당시의 환율로 환전하여 외화 지급 원칙
- (기존 인력 인건비)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% 초과 불가
 - * 단, 「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」 9.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.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
- (신규채용 인건비)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*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
 - *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 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
- (위탁연구개발비)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(현물포함)에서 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% 이내에서 계상 가능
- (연구수당)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
 - * 연구수당 계상 한도 :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(현금·현물 인건비, 학생인건비, 미지급 인건비 포함(단,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)의 20% 이내 계상 가능
 - **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
- (외부 전문기술 활용비) 기술도입비, 전문가활용비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(현물 포함)의 40% 범위에서 계상 가능
- (연구실운영비)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*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·계획(붙임2)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
 - * 사무용 기기, 사무용 소프트웨어, 연구실 환경 유지 기기 관련 비용(사무용품은 제외)
- (간접비)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(현물, 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)의 10% 이내로 계상 가능
 - * 간접비 고시 비율,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
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

-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,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
 - * 예시) 1.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, 2.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,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
-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(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),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%를 유지
 - *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. 단,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%씩 동시 참가는 가능
 - **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%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
- (신규채용 시점)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
 - *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(다만,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(1년 이상 고용 유지) 완료)
 - **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,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(다만,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(1년 이상 고용 유지) 완료)
- (채용조건) 만 15~34세의 연구직(정규직)
 - *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(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,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)
- 실적점검
 - (협약 시)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(채용시기, 채용인원 등)
 - *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
 - (위반 시)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(既 지급 인건비 포함)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
 - *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,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,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

□ **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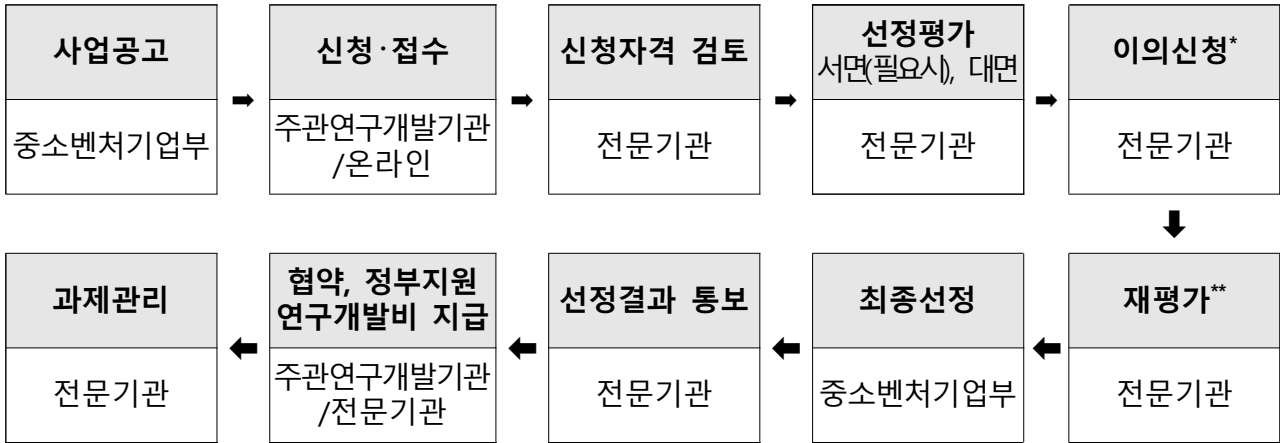
-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,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
 - *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,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
 - ** 예시)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
- (채용조건) 만 15~34세의 연구직
 - *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(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,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)
- (적용대상)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
-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,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
 - *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
 - **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
- 신규채용 기준

| 구분 | 기준 |
|------|--|
| 신규과제 |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|
| 계속과제 |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|

- (인건비 범위) 성과급 포함 인건비
- (현금부담 감액 범위)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
 - *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
- 실적점검
 - (협약 시)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(채용시기, 채용인원 등)
 - *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
 - (요건 미충족 시)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

2.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

- ☞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- ☞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



*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

**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

□ 신청자격 검토

-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(IRIS)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

*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[붙임1] 참고

□ 서면평가

- 기술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성, 사업성, 기술개발역량, 파급효과, 자금집행계획 중심으로 평가

$$\text{서면평가 평점} = \frac{\text{서면평가 점수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$$

[서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(안)]

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
| 기술성 (40) | ·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| 15 |
| | · 국제공동연구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, 개발기간의 적정성 | 15 |
| | · 지식재산권 확보·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| 10 |
| 사업성 (20) | ·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| 20 |
| 기술개발역량 (20) | ·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(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의 R&D수행 경험 및 수행 역량 등) | 15 |
| | · 연구윤리(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이력,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) | 5 |
| 파급효과 (15) | · R&D의 경제적 파급효과 | 10 |
| | · R&D의 기술적 파급효과 | 5 |
| 자금집행계획(5) | ·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| 5 |
| 합계 | | 100 |

□ 대면평가

- 기술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,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기술성, 사업성,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및 전략, 기술개발 수행 역량,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

$$\text{종합평점} = \frac{\text{선정평가 점수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 + \text{가점} - \text{감점}$$

* 가·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<참고2> 참조

[대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(안)]

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
|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및 전략 (30) | · 공동연구 필요성 및 국제협력을 통한 R&D 효과성 | 15 |
| | · 국외 협력 필수 유형 적합성, 추진체계 적합성, IP 확보 가능성, 인력교류 등 협력 계획 현실성 | 15 |
| 기술개발 수행역량 (15) | ·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수행 역량(연구팀 구성 계획,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) | 10 |
| | · 연구윤리(연구개발비 부정사용,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) | 5 |
| 기술성 (30) | · 기술개발 목표, 내용의 수준, 구체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| 10 |
| | ·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, 개발기간,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| 10 |
| | · 지원단계 별 연구개발 구성의 적합성(1-2단계) | 10 |
| 사업성 (20) | ·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, 방법, 일정,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| 10 |
| | · R&D의 경제적 파급효과 | 10 |
| 자금집행계획(5) | ·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| 5 |
| 합계 | | 100 |

□ 지원과제 확정

-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- 단, 상위 90%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하고, 이의신청 결과 ‘可’ 판정을 받은 과제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

□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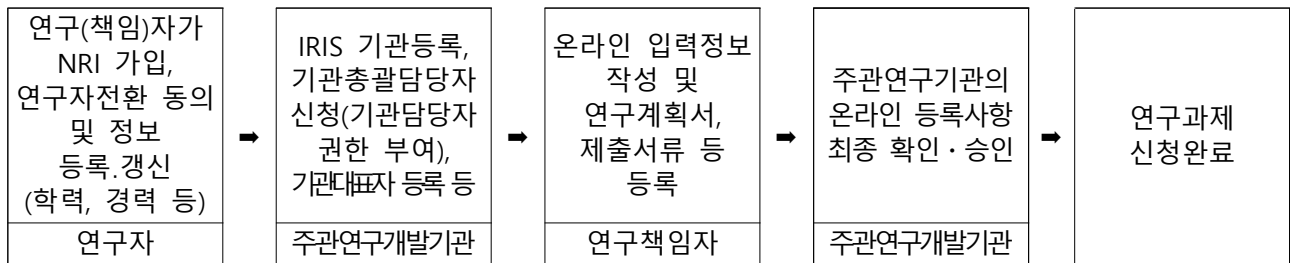
-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

3. 신청 및 접수 방법

- ☞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,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
- ☞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
- 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~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
- ☞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,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:00까지만 가능
- * 18시 이후, 신청 및 제출,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

□ **과제 접수기간** : '26년 5월 13일(수) ~ 6월 1일(월), 18:00까지

□ **신청 및 접수방법**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해 연구개발 계획서 신청·접수



□ 제출서류

- ☞ 연구개발계획서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, 그 외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
- *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
- ☞ 세부과제별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필요 서류 제출

< 글로벌협력형R&D 에코브릿지(수요품목) 제출서류 >

| 연번 | 서 식 명 | 제출서류 | | |
|----|--|------|-----|---|
| | | 필수 | 해당시 | |
| ① |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*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'26. 9. 1로 기재 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 * (본문1) 국문 20페이지 이내 작성, 영문 30페이지 이내 작성 * (본문2)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* (붙임1)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* (붙임2)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·관리 계획 * (붙임3)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| 본문1 | ○ | |
| | | 본문2 | ○ | |
| | | 붙임1 | ○ | |
| | | 붙임2 | | ○ |
| | | 붙임3 | ○ | |
| | | | | |

| 연번 | 서 식 명 | 제출서류 | |
|----|--|------|-----|
| | | 필수 | 해당시 |
| ② | 신용상태 조회·정보 활용 동의서 | ○ | |
| ③ |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| ○ | |
| ④ |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*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. 단,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| ○ | |
| ⑤ |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-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(25년)*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(24년) 재무제표**를 근거로 판단 *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: 재무제표증명원(홈택스), 재무제표확인원(회계법인,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) **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: 재무제표증명원(홈택스) | ○ | |
| ⑥ | 중소기업 확인서 *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| ○ | |
| ⑦ |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*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| ○ | |
| ⑧ |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| | ○ |
| ⑨ |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*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(확정)한 자료에 한함 *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| | ○ |

4. 기타사항

□ 기술료 징수기준

- (납부대상) 최종평가 “완료” 과제 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(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)
- (납부방식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아래의 표에 적힌 경상기술료 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,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

☞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

-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(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)의 일정비율로 납부
-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,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,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
- ③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

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산정

* 시스템사용 : www.iris.go.kr >>알림고객>>자료실>>IRIS사용메뉴얼>>온라인메뉴얼>>"기술료" 검색>>R&D업무포털 "사후관리(기술료)메뉴얼" 참고

* 법령확인: www.iris.go.kr >>알림고객>>자료실>>국가R&D법령.지침>>"중소벤처기업부", "기술료" 검색>> "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" 참고

□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

-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 소유를 원칙으로 함
- 다만,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기관 간 협의에 따라 계약서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
- 이 경우에도 국내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권리는 확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필수

5. 문의처

| 담당기관(부서) | | 문의사항 | 전 화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 | 시행계획 공고 |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|
| 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창업성장사업실) | 신청·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 | |
| 시스템 | IRIS 운영단 |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·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| IRIS 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 |
| 국제공동연구 개발기관 | 아스텔라스 제약 |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| astellas-inquiry-sm @astellas.com |
| | 마루호 |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| oyabu_ehc@mii.mar uho.co.jp |
| | 오노약품공업 |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| rnd19@tipa.or.kr |

* **(유의사항)**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관련 문의 시 검토기간, 시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소요예정일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 요망(문의 시 영어 활용)

☞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○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<http://www.mss.go.kr>

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<http://www.iris.go.kr>

○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: "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" / http://pf.kakao.com/_llfqd

참고 1**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제안서** **기관별 기술제안서 목록 (상세내용 별첨 참조)**

| 협력기관 | TP번호 | 기술분야명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
| 아스텔라스 제약 | AS-01 | Global Co-development of Targeted Therapeutics for Glomerular Diseases and Chronic Kidney Disease |
| 아스텔라스 제약 | AS-02 | Development of Cell and Gene Therapies for Posterior Retinal Diseases |
| 아스텔라스 제약 | AS-03 | Development of Therapeutic Agents for Fibrotic Diseases |
| 아스텔라스 제약 | AS-04 | Development of Antibody New Drugs for Lesion-Selective Removal in Chronic Inflammatory Skin Diseases |
| 아스텔라스 제약 | AS-05 | Development of Next-Generation Modality-Based Anticancer Platform Technologies |
| 아스텔라스 제약 | AS-06 | Development of AAV-Based Gene Therapy Platform for Neuromuscular and Central Nervous System Disorders |
| 마루호 | Maruho-01 | Co-development of Targeted Therapeutics for Dermatological Diseases and Related Conditions |
| 오노약품공업 | Ono-01 | Co-development of Next-Generation Modality-Based Anticancer Drug Candidates Based on Novel Targets and Innovative Mechanisms |
| 오노약품공업 | Ono-02 | Co-development of Next-Generation Therapeutic Candidates for Autoimmune and Allergic Diseases Based on Precision Immunomodulation |
| 오노약품공업 | Ono-03 | Co-development of Innovative Drug Candidates for Neurological Diseases Based on Glial Cell and Neuroinflammation Biology |

참고1

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(증빙서류)

□ 가 · 감점

- (가점)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.(단,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 항목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)

<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 가점 >

| 분야 | 우대사항 | 가점 | 확인방법 (증빙서류) |
|------------|--|----|---|
| 성과창출 강화 |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기업 | 1점 | 최종평가확인서 등 |
| |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* 최종평가 결과 '우수'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 책임자 | 1점 | 최종평가확인서 등 |
| |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,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기업 *중소기업R&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, 재 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| 2점 | 표창장, 상장 등 *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&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|
| |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,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| 2점 | 표창장, 상장 등 |
| |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 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* 조기완납 기준: 기술료 납부 1~3차년도 납부 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** 단,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| 1점 |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|
| 생태계 보완 |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| 1점 | 「여성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|
| | 주관연구개발기관이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 제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| 1점 |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서 |
| |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*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 소재 기업 | 1점 |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산업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등) |

| 분야 | 우대사항 | 가점 | 확인방법 (증빙서류) |
|----|--|----|---|
| |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*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 및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| 1점 |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 |
| |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비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에 소재하는 경우 | 2점 |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 |
| |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과제 수행 종료 후, 기술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| 1점 |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4조의 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|

<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 가점 >

| 연번 | 가점 사항 | 가점 | 확인 |
|----|---|----|---|
| ① | 중소벤처기업부 「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」 '강소, 강소+단계' 선정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* 「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제도」 선정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포함 | 3점 |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|
| ② | 최근 3년 이내 마이스터고등학교·특성화고등학교·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(계약학과, 기술사관, 취업맞춤반)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| 1점 |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|
| ③ | 「K-유니콘 프로젝트(예비유니콘 특례보증)」에 선정된 중소기업 | 1점 | 예비유니콘 인증(선정)서 |
| ④ |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| 1점 |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|
| ⑤ |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| 1점 |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⑥ |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| 1점 | 벤처기업 인증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⑦ |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| 1점 |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인증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⑧ |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| 1점 |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(MAIN-BIZ)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⑨ |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기업 | 1점 | 환경표지인증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⑩ | 「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」에 선정된 중소기업 | 1점 |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⑪ | 「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」 우수단계 선정 중소기업 | 1점 | 기술보호선도기업지정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⑫ | 「청년일자리 강소기업」에 선정된 중소기업 | 1점 |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
- (감점)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<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감점 >

| 연번 | 감점 사항 | 감점 | 확인 |
|----|---|-----|---------|
| ① |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| 10점 | 전문기관 확인 |
| ② |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*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* 정당한 사유 : 1.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, 2.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| 1점 | |

- (유의사항)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.